

# 심리상담 ·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23. 05. 08.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상지대학교 심리상담 · 인권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구성원의 심리적 · 정서적 · 교육적 문제의 예방 · 해결 및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인권 보호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한 심리상담 ·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신념,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성희롱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 또는 성적인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 정신적 · 물리적인 행위, 통신이나 매체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위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5. “대학 내 괴롭힘”이란 대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거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충민원”이라 함은 권리침해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7. “인권침해 등” 이란 성희롱 ·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8.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9.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10.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1.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2. “사건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3. “사건 관련인”이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14.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심리상담 ·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5.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16. “센터장”이란 심리상담 · 인권센터장을 말한다.

**제4조(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보고서를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 내에 학생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팀과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의 사건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 기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인권팀을 각각 둔다.

② 센터의 기능 및 직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리상담 ·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본교 구성원의 인권 및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의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하기 위한 조사 · 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③ 센터 내에 상담 및 인권업무를 위한 약간 명의 전임상담원과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④ 센터 내에 교육 및 연구업무를 위한 전임연구원과 센터의 제반 활동과 행정업무를 지원 · 담당하기 위한 팀장과 직원을 각각 둘 수 있다.

⑤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⑥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등에게 인권상담센터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장 상담팀의 업무

**제6조(상담팀 업무)** 상담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생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검사의 실시
3. 학습상담프로그램의 운영
4. 본교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5. 센터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실시
6. 학생상담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7. 심리적 고위험군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8. 그 밖에 본교 구성원의 상담에 필요한 사항의 실시

**제7조(센터 이용 학생의 권리 및 정보의 관리)** ① 센터 이용 학생은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는 거절할 권리 그리고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한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센터 이용 학생은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센터 이용 학생이나 주변 인물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도 그에 대한 정보를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③ 센터 관련된 기록(면접기록, 검사기록, tape, video tape, 편지 등)은 센터의 전문기록으로서 8년 동안 센터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는 파기한다.

④ 센터 이용 학생이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본인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응한다. 다만 센터 이용 학생과 관련된 타인의 사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제8조(평가주기 및 활용)** ① 센터는 내담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설문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한다.

② 센터는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 제3장 인권팀의 업무

**제9조(인권팀 업무)** 인권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본교 구성원 간 또는 당사자 일방만의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 관련 민원·고충민원 처리 및 갈등·분쟁조정 상담과 조사
2.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성희롱·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4. 성희롱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과 조사
5.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상담
6.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상담
7.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8. 그 밖에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및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10조(인권팀 업무의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성희롱 및 성폭력의 발생 범위는 교내 · 외를 불문한다.

## 제4장 위원회

### 제1절 심리상담 ·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제11조(심리상담 ·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교무연구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행정지원처장, 생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 ·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환류시스템 운영(신입생 및 재학생 만족도 조사 평가와 프로그램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2절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

**제12조(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 ① 센터는 본교 구성원의 인권 및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대표 및 외부전문가로 하며, 양성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운영위원 중 반드시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킨다.  
③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 ⑤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5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신고사항 중 피해자 및 가해자에 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사건을 심의하는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에는 학생대표의 참석을 제외한다.
- ⑧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 및 양성평등업무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특정 사안의 조사, 중재 및 징계 요구
  - 4.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5. 양성평등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지도에 필요한 사항
  - 6. 기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7. 본교의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제7호 이외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9. 인권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 등

### 제3절 조사·심의위원회

- 제13조(설치)** ① 센터장은 본교 구성원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의 사건 신고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심의가 종결되면 해산한다.
-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전문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일 경우에는 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 ⑤ 위원장은 조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조사·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센터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4조(기능)** ① 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심의한다.

- 1.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의 사건 조사, 심의
- 2.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의 사건 조사 결과보고

## 서의 작성 및 제출

3.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② 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사건 관련 의결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의 사건을 조정 · 중재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조사대상, 시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조사위원의 제척과 기피) ① 조사 ·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 ·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조사 ·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조사 ·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조사 ·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② 당사자는 조사 ·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사 · 심의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조사 · 심의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제17조(조사 · 심의 결과 제출) 위원장은 사건 조사 · 심의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 제18조(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센터에 한다.

- ②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센터 이외의 본교 부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센터는 신고 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센터에 정식 신고가 없더라도 센터에서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 및 양성 평등 위원회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⑥ 전항의 경우 센터장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절차와 별도로 사건 당사자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센터는 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된 이후, 상담과정과 사건 처리과정 중 필요시 가해자의 자퇴 · 휴학 · 퇴학 · 사직 · 휴가 등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리를 보류하거나 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센터장은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근로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당 학과나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신고의 각하 또는 기각)**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피해신고를 한 제3자는 피해자 보호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제21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2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운영위원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피해자, 가해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신고 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의 방법 및 보고)** ① 센터장 및 상담위원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하여야 한다.

1. 신고인 · 피해자 ·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상담위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상담결과,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①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본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며,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5. 그 밖에 성희롱 ·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② 구성원에 대한 교육업무는 교원은 교무연구팀, 직원은 행정지원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예방조치)** 성희롱 · 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상담창구 마련
2.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지원
3.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4. 성희롱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5. 성희롱 · 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

**제26조(화해의 권고)** ①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하에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7조(구제조치 등)**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하에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

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및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8조(제2차 피해의 방지)** ① 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괴롭힘, 그 밖의 권리침해) 사건의 조사는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행위

2.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이유로 조사자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자를 새로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불이익의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자는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학업평가, 업무참여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장 보칙

**제30조(수당 등 경비)** 센터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운영세칙)**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본교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부칙 (기획예산팀-1068, 2023.05.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상지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및 학생심리상담센터 규정은 폐지한다.